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3월 17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3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문화국장 송오섭)

가. 제안이유

- 육군 부대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하고, 인용 법률인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이 2016. 5. 29. 「예비군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(안 제4조)
 - 1) ‘육군 제7688부대’를 ‘육군 제2051부대’로 변경
 - 2) ‘제522기무부대 금천구 지역담당관’을 ‘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 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’으로 변경
 - 3) ‘구로소방서장’을 ‘금천소방서장’으로, ‘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’을 ‘서울관악

고용노동지청장'으로, '구로세관장'을 '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장'으로 변경

- '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'을 '「예비군법」'으로 변경(안 제10조)
- [별표 1]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내 부서명칭 현행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수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육군부대 조직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하고, 인용 법률인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이 2016. 5. 29. 「예비군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하여
 - 1) '육군 제7688부대'를 '육군 제2051부대'로 변경
 - 2) '제522기무부대 금천구 지역담당관'을 '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 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'으로 변경
 - 3) '구로소방서장'을 '금천소방서장'으로, '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'을 '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장'으로, '구로세관장'을 '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장'으로 변경 하였으며
- 안 제10조 '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'을 '「예비군법」'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한 사항으로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